#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62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임호선·임미애·염태영

권칠승 • 안도걸 • 이상식

정준호 · 강경숙 · 이기헌

이연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·보존 선박 등(이하 "장기계류선박"이라 함)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및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·침몰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커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·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·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·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제4항 중 "경우에는"을 "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·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15조(출입검사・보고 등) ①     | 제115조(출입검사・보고 등) ① |  |  |
| ~ ③ (생 략)              |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|  |  |
|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       | 4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<u>경우에는</u> 소속 공무원으로 하 |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・계류    |  |  |
| 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       | 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  |  |  |
| •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        |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    |  |  |
| 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       | 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    |  |  |
| 다.                     |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<u>하는 경우에는</u>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⑤ ~ ⑦ (생 략)            |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|  |  |